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90
----------	-----

2009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9년 3월 9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1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4월 27일 상정 · 보류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6월 25일 상정 · 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 순 구)

가. 제안이유

- 서울광장 · 청계광장 및 현재 조성중인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광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의 승인, 광장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시민, 판검사 및 변호사,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의 대표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용 훈)

가.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서울광장, 청계천광장 및 조성중인 광화문 광장 운영과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광장, 청계광장과 2009년 6월 완공예정인 광화문광장은 각각 조성시기, 조성목적, 시설내용 등이 다른 관계로 별개의 조례와 운영주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청계광장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주관부서 - 물관리국 하천관리과

- 서울광장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관부서 - 행정국 총무과

- 광화문광장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관부서 -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

- 서울광장 등 3개 광장은 서로 인접해있고 인근에 덕수궁, 경복궁, 청계천 등 관광명소가 산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행사 등의 개최를 원하는 공공기관 및 각종단체 등의 광장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광장마다 운영주체가 다른 관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행정기관의 일방적 광장 사용허가 결정에 비판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는 위원회 설치를 통해 3개 광장 운영의 통합적 관리와 광장 운영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은 물론 광장 운영과 관련된 각종 결정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광장 조례와 별도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첫째, 본 제정안에서와 같은 위원회 형태의 의사결정구조가 광장의 공익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임.

※ 위원회의 설치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신중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한 원칙 없이 설치·운영될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행정기관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¹⁾

- 둘째, 현재 서울광장 및 청계광장의 경우 사용 및 관리 또는 이용에 관하여 개별적인 조례가 있으며, 광화문광장 또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주관부서와 광장의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각 조문들이 대동소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위원회 설치 조례와 함께 각 조례들의 통합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규정인 제1조에서는 서울광장, 청계천광장,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 제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2008). 「자치법규 입안실무」, 92쪽.

- 제2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의 경우 사용 및 관리 또는 이용에 관하여 개별적인 조례가 있으며 광화문광장 또한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각 광장과 관련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였을 경우 본 조례에서의 위원회 기능 및 위상에 영향은 없는지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면, 각 개별 조례에서 광장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여 통합 운영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위원회와 주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과 권한의 상충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됨.

3)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세부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첫째,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과 둘째, 광장 운영의 세부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셋째,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을 두고 있음.
- 제출안에 의할 경우 이미 승인이 이루어진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 이미 결정된 세부적인 기준, 그리고 시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심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수도 있는바, 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각 광장의 운영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 ‘광장의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으로 심의할 사항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대학교수
5.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6. 관계공무원

○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시민위원회의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적다고 볼 수 있으며, 광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민위원회 구성 인원 현황 >

- ◆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 25인 이내의 위원
-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100인 이내의 위원
- ◆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 40명 이내의 위원
-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 40명 이내의 위원

○ 제4조제3항의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
하는 시민'과 '관계 공무원'과 같은 규정은 그 대상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같은 경우도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43명)의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판·검사 등이 반드시 시민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유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있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할 필요성 등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대표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의 경우 성향이나 활동분야 등이 다른 수많은 단체가 존재하고 있어 그 중 어느 시민 단체의 대표나 임원을 선정할 것인가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따라서 다른 시민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5)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 해촉, 보궐위원의 임기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대표 및 통괄의 역할과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제3호에 위원장은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사항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한 직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 하겠음.

7)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회의의 소집, 제4항은 회의 통지, 제5항은 개의 및 의결, 제6항은 회의록 작성·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2항의 회의 구분(정기회 및 임시회)과 제3항의 분기별 1회의 정기회 개최 및 임시회 수시 소집 조항과 관련하여 안 제2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분기별로 각 시기에 맞추어 정기회의 개최가 가능하게 안건들이 상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기회에 다루어야할 안건과 특별한 경우에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에 관한 규정 등 회의가 융통성 있게 개최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의 정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음.

8)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장총괄부서의 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안 제8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광장총괄부서의 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광장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기 보다는 ‘과장(담당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또한 현재 청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의 주관부서로 물관리국 하천관리과(청계광장), 행정국 총무과(서울광장),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광화문광장)이 각각 지정되어 있는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만을 둘 때 어느 부서를 광장총괄부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문의 명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9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10)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안 제10조는 위원의 제척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 의결에 대하여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1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둔 것임.

다. 결 론

- 집행부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청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운영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민주성과 공신력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각 광장과 관련하여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조례간 상충성 문제와 함께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바, 위원회 설치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또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의 조례안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2008년 12월 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전시·홍보성 행정집행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10명의 인원은 대표성 측면에서 적은 것이 아닌가?

(답변) 전문위원 검토대로 인원을 약간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질의) 위원의 자격에서 굳이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필요한지, 시민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답변) 위원의 구성안에 있어 좀 더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성이 있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수정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보다 위원회의 합리적인 기능 및 구성이 되도록 하고 간사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함.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790
----------	-----

제안년월일 : 2009년 7월 10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있어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구성 및 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사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에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기본 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세부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임명· 위촉되는 위원은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서울 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특별시 3급이상 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제1항, 제3항)
-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과장(담당관)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하도록 간사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호 중 “의 승인”을 삭제하고, 제2호 중 “세부적인”을 “전반적인”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10명 이내”을 “15명 이내”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과장(담당관)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광장 운영의 <u>세부적인</u>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p>제3조(설치 및 기능)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 광장 운영의 <u>전반적인</u>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제정안과 같음)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u>제5호까지의</u>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p> <p><u>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u></p> <p><u>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u></p> <p><u>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u></p> <p><u>4. 대학교수</u></p> <p><u>5.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u></p> <p><u>6. 관계공무원</u></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u>제3호까지의</u>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u> <u>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u>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u> <u>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u>
<p>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p> <p>② <u>간사는 광장총괄부서의 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u></p>	<p>제8조(간사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과장(담당관)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u></p>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과장(담당관)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